공동선별비지원

세부사업명	농산물 공	동출하	확대 지원			세목		치단체 상보조	
내역사업명	공동선별비	공동선별비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사업목적			h·조직화를 유 제고 등 농신				물 유통비용	용 절감 및	
사업 주요내용	○ 공동 선	선별·출전	하·계산 물량(에 대한 선팀	별에 소요	요되는 비용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제110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지원한도		-	보조금 배정ㅎ 보조금 배정싱			외			
재원구성 (%)	국고	10~5	0 지방비	10~25	융자	-	자부담	50~8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O년 ———	
연도별 제저트이	합계 ———		46,218	46,218		50,978	56,9)20	
제정투입 계획	국 고		8,088	8,088		8,921	9,9		
	지방비		8,088	8,088		8,921	9,9		
	자부담		30,042	30,042		33,136	36,9	98	
담당	당기관		담딩	가	F	남당자	연락	박 처	
농림축산식품 한국농수산식 자치단체		. †	유통정책과 산지경영부 시군구 농정				044-20 061-93		
신청시기	전년도 8월 말 사업시행기관 시·					시·도, 🗸	시·군·구		
관련자료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협동조합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78조(보조금의 부정 수급)에 따라 부당사용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 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사업참여 생산자 조직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통합마케팅 조직의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 - 자금 배정 권한 : 산지조직간 마케팅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를 위하여 통합마케팅 조직에게 참여조직에 대한 자금 배정 권한 부여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¹⁾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²⁾하는 경우에 지원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 기타 출하처(온라인판매 포함)로서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사업량으로 인정
-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한 실적이 우수한 조직 및 APC 경영진단 우수 조직 등에 우선 지원 가능

¹⁾ 지자체와 산지유통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는 브랜드 또는 다수의 생산자조직이 참여한 시·군 단위 이상의 브랜드 또는 산지유통조직의 1개 고유 대표브랜드 및 농협계통브랜드

²⁾ 참여 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등급별 평균단가로 공동 정산하는 제도(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은 별도 공동계산 가능)

3. 지워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참여조직은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해 지원
 - 지원 품목: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숙주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 관련 '15년 8월 1일부터 사과 15kg 상자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지원 제외
 - * (예고) '21년 지원부터는 원예산업종합계획 미수립, 승인취소 지자체(품목광역조직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비율
- ① 시・군 단위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 ② 품목광역조직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50%,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20%. 자부담 80%
 - * 자부담은 농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부담 근거는 농가별 정산서에 선별비 공제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고, 조직과 농가간 별도의 협의에 따라 선별비를 공제한 것도 인정
 - * (공통) 매취사업은 계약재배한 물량에 한해서 지원
- 지원기준 및 단가
 - [별표 1]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를 적용
 - * 전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추가 지원(5백만원 한도)
 -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추가 지원(A등급 10백만원, B등급 5백만원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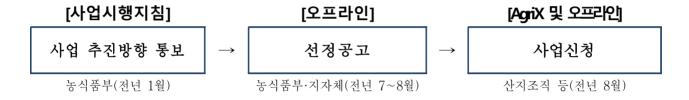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참여조직 기준)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조직규모, 전년도 사업실적,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별 예산 배정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하한 : 1백만원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상한 : 500백만원 내외

Ⅲ / 사업추진체계

-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농협, 법인 등)는 사업자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 * 불용·이자액 반납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정산액에 대해서만 가능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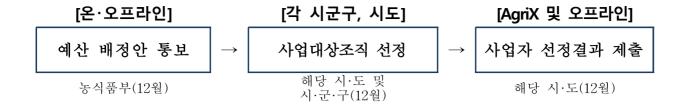
사업대상조직

- 사업희망 조직은 공동선별시설이 소재하는 시·군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전년도 8월)
- 품목광역조직은 소재지 관할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신청
- 사업 신청은 산지통합마케팅 조직이 참여조직의 신청을 취합·조정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정산은 실집행 조직이 신청

시・도(시・군)

- 시·도 및 시·군은 사업대상조직('19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전년도 8월)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사업자별 신청내역을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 시·도로 제출(전년도 8월)
- 시·도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사업자별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전년도 8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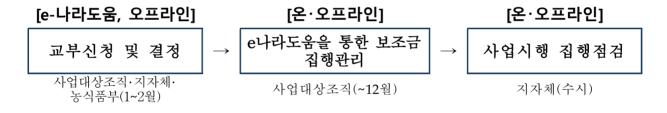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규모 및 예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가내시 결과를 각 시·도 및 aT에 통지(전년 10월중순)
- 각 시·도별 예산배정(안)을 확정하여 해당 시·도 및 aT에 통지 (1월초)

시・도(시・군)

○ 시·도는 예산 배정 한도 내에서 배정기준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안)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2월 중순까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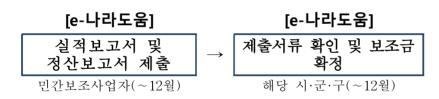
농관원 및 시・도(시・군)

- 시·군은 농관원의 협조를 받아 포장재 제작협의서[별지 제2호 서식]을 2부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와 각각 1부씩 보관(1월)
 - * 사업 신청량과 포장재 재고를 확인하고 신규제작이 필요 없을 경우 그 내용을 제작협의서에 명기하여, 사업 정산 시 사업물량 검증 등에 참고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별표 2]에 따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
- 시·도는 시·군별로 사업계획변경 시 배정예산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 시행하되.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는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시행
- 농관원은 2년 마다 주요 사업조직을 대상으로 단가조사를 실시하여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 갱신
-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은 정산하여 그 결과를 사업기간 다음년도 1. 10.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1. 20. 까지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사업대상조직

- 공동선별·출하·정산이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 익월 5일까지 정산서 집계표(수탁)[별지 제4호 서식], 물량 집계표 (매취)[별지 5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신청
 - 당해 연도 정산한 물량에 대한 보조금은 12월말까지 지급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세부 일정은 시·군과 협의)
 - * 농가 "정산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1.1.~12월말) 내에 정산한 물량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
- 공동계산 정산서, 출하내역서, 공동선별 작업일지,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을 자체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의 확인요청 시 제출해야 함
- 정산서에는 농가별 선별비 지원내역 명시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대상자명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계획서 제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추진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aT

○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 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시 · 도(시 · 군)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을 매 분기별로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품목별 공동선별·공동출하시기에 사업추진상황 수시 점검
- 정산시 농산물 정산 내역 확인(농가별 정산서에 선별비 지원 내역 명시)

《표준규격품조사》

농 관 원

- 수시로 산지와 소비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사업조직에 통보 및 행정처분
- 행정처분(시정명령, 표시정지 등)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

《제재사항》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의 조치(농식품부 보고)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조금 관리에 관하 법률)

Ⅳ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에 따른 조직화취급액 등 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산지 조직의 조직화취급 확대
 - * 산지유통종합평가 주요내용
 - 평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주관)
 - 평가내용: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 통합사업역량 등
 - 평가일정 : 2~3월(연 1회)

《환 류》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우수조직은 다음해 사업비 배정 시 인센티브 적용

[별표 1]

2020년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국고보조기준)

		21 x2 x2 x2		kg당 지원	l단가(원)	
구분	품목	선별비용 (이 /1)	시·군단		품목 광역	역 조직
		(원/kg)	매취(10%)	수탁(25%)	매취(20%)	수탁(50%)
	감귤	159	16	40	32	80
	단감	155	16	39	31	78
	떫은감	115	12	29	23	58
	레드향	318	32	80	64	159
	매실	105	11	26	21	53
	무화과	407	41	102	81	204
	ηӇ	214	21	54	43	107
	백향과	547	55	137	109	274
	복숭아	229	23	57	46	115
과실류	블루베리	808	81	202	162	404
	사과	174	17	44	35	87
	양앵두	808	81	202	162	404
	자두	197	20	49	39	99
	참다래	186	19	47	37	93
	천혜향	318	32	80	64	159
	체리	808	81	202	162	404
	포도	333	33	83	67	167
	한라봉	318	32	80	64	159
	황금향	318	32	80	64	159
기 근	감자	100	10	25	20	50
서류	고구마	163	16	41	33	82
	가지	126	13	32	25	63
	곰취나물	808	81	202	162	404
	깐대파	279	28	70	56	140
	깐마늘	270	27	68	54	135
	깻잎	163	16	41	33	82
채소류	꽈리고추	180	18	45	36	90
	단호박	93	9	23	19	47
	당근	228	23	57	46	114
	대파	351	35	88	70	176
	딸기	647	65	162	129	324
	마늘	451	45	113	90	226

		यो भी घो Q	별비용 kg당 지원단가(원) 시·군단위 조직 품목 광역 조직						
구분	품목	(원/kg)	시·군단						
			매취(10%)	수탁(25%)	매취(20%)	수탁(50%)			
	멜론	113	11	28	23	57			
	무	83	8	21	17	42			
	미나리	639	64	160	128	320			
	방울토마토	132	13	33	26	66			
	부추	287	29	72	57	144			
	브로콜리	132	13	33	26	66			
	상추	499	50	125	100	250			
	수박	48	5	12	10	24			
	시금치	163	16	41	33	82			
	애호박	83	8	21	17	42			
	양배추	117	12	29	23	59			
	양상추	91	9	23	18	46			
채소류	양파	94	9	24	19	47			
	얼갈이배추	166	17	42	33	83			
	연근	325	33	81	65	163			
	열무	245	25	61	49	123			
	오이	129	13	32	26	65			
	쥬키니호박	99	10	25	20	50			
	참외	182	18	46	36	91			
	콜라비	63	6	16	13	32			
	토마토	104	10	26	21	52			
	파프리카	155	16	39	31	78			
	 풋고추	280	28	70	56	140			
	풋옥수수	71	7	18	14	36			
	피망	131	13	33	26	66			
	느타리버섯	260	26	65	52	130			
버섯류	새송이버섯	260	26	65	52	130			
	양송이버섯	456	46	114	91	228			
	국화	44(본당)	4(본당)	11(본당)	9(본당)	22(본당)			
화훼류	장미	41(본당)	4(본당)	1. 10(본 당)	2. 8(본 당)	21(본당)			

- 주) 1.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농산물 종류별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2. 신선편이 농산물은 원료 농산물의 품목별 지원단가를 적용하되,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종류별 최저단가 적용
 - 3. 2년 마다 농관원에서 주요 사업조직을 대상으로 단가조사를 실시해 갱신
 - 4. 표고버섯(배지)은 버섯류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공동선별비 지급 확인표

확인조직 : 00범인 월 일 확인일자 : 년 확 인 자: 시.군.구 직 성명 (인) 확 인 사 항(공통) 확 인 결 과 ①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의 충족여부 - 규격포장재 사용, 표준규격 준수, 공동브랜드 사용, 공동 선별·출하·계산 실시여부 - 생산자명의 사업대상자(법인)명 사용여부(개인 또는 작목반 명칭만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② 자체 보관서류의 비치 및 기록여부 - 공동선별 작업일지 기록 및 품질관리사(책임자) 서명여부 -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 기록여부 - 공동계산 정산서 기록여부 - 기타 자체 보관서류의 관리·보관여부 * 사업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서류 보완 후 사업비 지급 ③ 공동선별 출하물량과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 수량과 일치여부 - 출하물량은 각 사업장에서 통보받은 출하정산내역의 수량과 일치하여야 함(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직거래, 개인출하 물량은 지원제외) - 포장재 사용량(매)=공동계산물량(kg)÷포장 단량 * 신선편이 농산물의 경우 외포장재 단량(1~6kg)을 판매처에 따라 조정 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④ 품목별, 사업방식별 지원단가 적정여부 - 사업시행지침의【별표 1】 지원단가 참고 ⑤ 공동선별비 신청물량의 중복여부 - 전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중복여부 확인 ⑥ PB(Private Brand. 유통업체 자체상품) 제품의 공동선별비 신청여부 - PB(Private Brand)제품 출하수량 확인 * PB제품의 경우 표시사항의 준수가 어려움(단. ①번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에는 보조금 지원) ⑦ 수출농산물의 공동선별비 지원 - 타 사업에서 수출물류비를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 관련 사업에 선별인건비 지원항목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

* 수출농산물은 포장, 등급이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지 않아도 지원

가능

확 인 사 항(공통)	확 인 결 과
 ⑧ 표준규격품 외(등외품) 선별물량의 공동선별비 신청여부 및 포장품의 표준거래단위 준수여부 - 수탁(매입)물량 대비 선별·출하물량의 적정여부 * 선별・출하물량은 농가의 수탁물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규격의 등급(특, 상, 보통) 외의 등외품 및 품목별 표준거래단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이 제외됨 	
 ⑤ 출하처에서 통보된 출하정산 내역서의 출하자가 사업 대상조직명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 * 작목반이나 개인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확인하고, 사업 대상조직(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비 지급 제외 	
확 인 사 항(수탁) ① 공동계산 실시여부 확인 - 정산 내역에 따른 공동계산의 적정여부 확인(농가별출하대금 지급내역 등 확인) * 공동계산은 사업대상조직 단위의 공동계산을 말함 (동일등급에 대하여 다른 단가를 적용하거나, 등급별 단가를 작목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공동계산이 아님) * 정산일 당일에 공동계산 기간을 달리하여 2건 이상으로 각각정산하는 것은 공동계산으로 미인정 ① 정산서 집계표와 공동계산 정산서의 일치여부 - 정산기간 동안 등급별 평균단가로 출하자별 정산여부	확 인 결 과
② 지급된 보조금의 사후정산 적정여부 - 전 지급된 공동선별비의 개인별 지급여부 확인 * 정산서 집계표에 따른 신청금액과 개인별 입금내역의 일치여부 확인 확 인 사 항(매취)	확 인 결 과
⑩ 매입물량과 출하물량의 일치여부 * 일반적으로 매입량이 많아야 하며, 매입장부와 대금 지급한 자료 (입금전표 등) 확인	9 6 8 9
① 물량 집계표와 공동선별·출하 내역서의 일치여부 * 사업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서류(출하정산내역, 계산서, 송품장)에 기재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	
 ② 공동선별비 중복지급 여부 및 매입처 확인 * 공동선별비가 지원된 농산물을 매입하여 재포장(신선편이 등) 후 출하한 농산물의 이중신청 여부 * 도매시장 등에서 매입한 물량 등 생산자(생산자단체)와 계약 재배하지 않은 물량은 지원제외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공동선별비

2. 조직구분 :

※ 조직구분은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3. 현 황

			入	l업자명												
	사업자	- /	사업.	자등록번호												
			사 (거	업장주소 주지주소)												
조직	조직			성명							생년旨	일일				
현황	대표자		を (*	l화번호 핸드폰)							E-ma	ail				
	품질관리	사 성	명		국가계	사격증 병	번호									
	조직결/ 일자	성			·	(실	조 ² 사업	직원 참 ⁰	[수 겨자수 _])		E	녕			
재배	품목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광당별 애팅		\$		출	하완료	예건	병일					
현황				(m² ha)			톤		톤						
	보조금(공동선별비)							천유	원 (국 ¹	1]	천원,	지	방비	え	년원)	
	표 준 규 격 품 출 하 실 적															
전년도	계	공동 계산	Ž	친환경인증	규격출하		GA	ΑP		지라	적표시		이력취	추적		일반 출하
지원. 출하	톤	돈	_	톤		톤			톤		Ţ	Ē		ī	Ē	톤
실적	상 포 (브랜	또 명 드명)				·			상표 등록	/의건 북번호	ડ્ડો- -	·			·	
	기타	실적		당도표	시 물량		조	직 f	원교육 견	및 학	선진기	()				
						톤				회,		명				
공동 시설 보유 현황	집 ㅎ	가 장		선별(과)장	저은	- 스저장고 일반창고		구고	선	<u>년</u> 별((과)기		기타 - 시설 !	공 동 및 장비		
보유 현황	동, (m²)		동, m ^² ()	동, (m²)		Ţ	ਛੋ, mੰ ()		(조)		()

4. 사업계획

○ 사업신청 내역

품 목	사업방식 (수탁, 매취)	보조금(국비+지방비) kg당 지원단가	사업 계획량(kg)	보	조금 신청액(찬	원)
<u> </u>	(수탁, 매취)	(원)	기업 계약 8(Kg)	계	국비	지방비
-1 11						
합 계						

5. 사업참여 조직원별 세부내역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 목	재배면적 (m²)	매 취 계획량(kg)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합계							

주) 재배면적, 총 생산계획량, 공동선별 계획량, 인원수는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6. 기 타

-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 하거나,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으며,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교부결정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관련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자대표 성명: (인)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협의서

	사업	참명								
기시키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주	소								
	전호									
	회	사 명								
	사업자	등록번호								
포장재 제작회사	대포	E자명								
	주	소								
	전호	·번호								
			<협	의 결 과	>					
1. 포장재 크	17]									
품 목	포장재 재질	단량 //va 게\		상재 제작		포장재 크기(mm) 길이 너비 높이				
		(kg,개)	<i>)-</i>	획(매)	선의	- Пн	<u> </u>			
), 산지(), 품 산자단체의 명 수() 품 및 가격 품예정일 :									
	확 인					년	월	일		
	시.군.구	남당지	-:		성명			(인)		
	농관원	담당자	:		성명		((인)		
	사업자	대 표	•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

1] 청구자 ○ 조직명 : ○ 대표자 성명 ○ 주소 : ○ 전화번호 및 ○ 보조금 입금 - 은행 및 예 - 예금주 실덕 - 계좌번호 :] 사업기간	및 담당자 : 금통장 금주 : 명번호(사업자등	등록번호) : (통장사본	별첨)					
] 기립기진] 청구금액		의	(구비	이 기바	н) 의	1		
				(국비	헌, 시경	비 원	.)		
□ 공동선별비용 청구 내역									
	품 목	사 업 방 식	총 공동선별 수량			보조금(천원)	1		
			(kg)	(국비+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수탁, 매취, (수출 여부)							
i									
	합 계								
		위오	와 같이 공동선별비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조직도	경 :					
	성 명: (직인)								
					,				
	확인자		시.군.구 일자: . 농관원 일자: .		성명: 성명:		인)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 물량)

품목: 공동계산기간: 년 월 일 ~ 월 일

출하자 번 호	성 명	출하수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국비 + 지방비) (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공동선별비지원단가)
계				

주1) 출하수량(A) :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의 출하자별 총출하수량을 말함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집계표(계약재배 매취사업물량)

□ 조직명 및 품목 :	(품목 :)
□ 공동선별 기간 :		
□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		

			출 ㅎ	 } 처
일 자	출하물량(Kg)	출하금액(원)	출하처명	증빙서류명
계				

주1) 출하물량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에게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출하정산내역, 계산서, 송품장에 기재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증빙서류 원본보관 철저)

【별지 제6호 서식】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공동선별비) 변경계획서

- 1. 사 업 명 :
- 2. 조직구분 :
- 3. 현 황

조 직 현 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조직원수 (실사업참여자수)				
재 배	품 목	재배면적	생산 계 획량	표준규격품 출하예상량	출하완료예정일	
현 황		m² (ha)	톤	톤		

4. 변경계획

○ 신청 내역

품 목	사업방식 (수탁, 매취)	보조금(국비+지방비) kg당 지원단가 (원)	사업 계획량(kg)	보조금(천원)		
				계	국비	지방비
		•				
합 계						

○ 변경 내역

품 목	사업방식 (수탁, 매취)	보조금(국비+지방비) kg당 지원단가 (원)	사업 계획량(kg)	보 조 금(천원)		
				계	뀩비	지방비
합계						

5. 변경사유:

☑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변경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자대표 성명: (인)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Q & A

- [Q 1] 전년도 공동선별 조직이 금년 농식품부에서 정한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조직에서 탈락하였을 경우 지원가능한지?
 - [A] 전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은 **금년도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음.
- [Q 2] 산지유통조직이 공동선별비를 지원받아 수탁 참여농가에 환원하지 않고 선별인건비로 지출한 경우는 적정한 것인지?
 - [A]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지원받은 공동선별비를 농가에 환원하지 않고 공동선별 인건비로 직접 지출하면서, 농가로부터 선별비를 제외할 때 이를 정상적으로 상계처리 하였다면 인정(다만, 상계처리에 따른 확인과정이 어려우므로 정상적인 사업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농가별 지급 원칙)
- [Q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사업장에 개인별 전표를 작성 출하한 후 유통사업장으로부터 출하전표 또는 송품장 등에 출하자 명의가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아닌 개인 또는 작목반 출하물량으로 기재된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요건에 맞는지?
 - [A] 사업의 주체가 개인이나 작목반인 경우는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에 미달하므로 공동선별비를 지원할 수 없으며, 사업의 주체가 산지 유통전문조직이면서 전표나 송품장이 개인 또는 작목반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산지유통전문조직 명의의 전표 및 송품장 기록
- [Q 4] 수출농산물에 대하여 공동선별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 [A]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에서 수출물류비 (포장비, 운송비, 선별인건비 등)가 지원될 경우 선별비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지원이 제외됨
 - * 수출물류비와 중복지원 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 [Q 5] 대형유통업체에 MPB, PB상품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공동선별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 [A] MPB, PB상품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공동선별비의 지원요건(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는 것임
- [Q 6] 통합조직의 참여조직이 통합조직을 거치지 않고 개별 출하하거나 통합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 [A] 참여조직의 개별출하 및 개별브랜드 사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0 7]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의 정산기간(공동계산기간)은?
 - [A] 품목별 특성에 따라 기간별 가격차이가 심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산기간은 해당 조직에서 정하여 실시하되, 같은 정산 일에 공동계산 기간과 평균단가를 다르게 적용하여 각각 정산한 것은 공동계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Q 8] 공동선별비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직거래 한 후 출하관련 내역서를 받았다면 공동선별비지원이 가능한지?
 - [A] 출하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
- [Q 9] 공동 선별하여 출하한 물량 중 택배물량(우체국전자상거래, 직거래, 개인)도 지원이 가능한지?
 - [A] 출하처의 사업자등록증거래내역서·영수증 등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판매 택배물량은 지원이 불가능함
- [Q 10] 동일품목에 대해 산지유통전문조직 단위의 공동계산을 실시하지 않고 작목반 단위의 공동계산을 실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 [A] 공동계산이라 함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참여 생산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동안 공동으로 선별·출하하고, 판매대금을 등급별 평균가격에 기초하여 생산자에게 정산하는 제도임.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이 산지유통전문조직 이상이어야 하므로 작목반 단위의 공동계산은 지원대상이 아님

- [Q 11]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한 공동선별비 지원시 중량 측정은 해당 원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처리후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 [A] 출하물량에 대한 지원이므로 전처리후의 중량 기준임
- [Q 12]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이 타 사도(군)에서 매취형 공동선별을 실시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한지?
 - [A] 매취형인 경우 공동선별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고,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실적확인이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
- [Q 13] 수박과 같은 과채류는 대부분 다단식 목재상자로 출하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 기준은?
 - [A] 공동선별·출하하여 낱개 단위로 판매되므로 공동브랜드 및 표준규 격품 표시사항은 다단식 목상자에 일괄표시 또는 스티커 등으로 낱개 단위로 표기하여야 지원이 가능함
- [Q 14] 공동선별조직에서 고용한 공동선별 인력이 선별장이 아닌 포전에서 수확과 동시에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이 가능한지?
 - [A] 포전에서의 인건비 발생은 선별 인건비라기 보다 수확 인건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공동선별의 취지상 수확과 선별을 분리하여 시설이 갖춰진 **선별장에서 집하하여 선별해야 함**
- [Q 15] 공동선별조직에서 농산물을 매취 할 경우 농업인과 생산자조직 (법인, 작목반)외 일반 중간 상인(유통업자)으로부터 매취하여 공동선별 하였을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 [A] 중간상인, 도매시장 등에서 매취한 농산물은 지원 불가.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에게 매취한 물량만 인정
- [Q 16] 공동계산은 참여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별 평균단가를 공동으로 계산하면서 같은 등급에서 크기구분에 따라 가격차가 많은 경우, 크기별 구분하여 평균단가로 정산해도 되는지?
 - [A] 같은 등급일지라도 크기구분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 경우 크기구분별 평균단가 정산가능(단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경우만 인정)

- [Q 17] 공동선별 조직에서 1~10월까지 출하한 물량을 11월에 정산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11~12월에 출하한 물량은 다음연도 1월에 정산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 회계연도 구분은?
 - [A] 정산일을 기준으로 해당 회계연도 보조금으로 지급, 즉 당년도 내 ('18.1.1. ~ 12.31.)에 정산한 물량은 당해연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다음연도('19.1.1.~12.31.)에 정산한 물량은 다음연도 보조금으로 지급
 - * 동 사업은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정산을 완료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공동 계산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 상 회계연도 내에 3개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마지막 절차 인 농가 "정산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보조금으로 지급(사과, 딸기 등 해를 걸쳐 진행되는 품목 감안)
- ** 실 집행 및 조기집행을 위해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